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73

발의연월일: 2023. 3. 7.

발 의 자:김승남・신정훈・김영호

이원택 · 최종윤 · 위성곤

이학영 · 소병훈 · 김홍걸

민홍철 · 서삼석 · 설 훈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 및 흡수원 증진 활동(REDD+)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도상국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22, 10, 31,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파리협정 발효('15) 이전에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산림의 관리를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시책을 규정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 국외 산림에 대한 시책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발의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사업 범위와 일부 중복성을 가짐.

이에,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 나.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 다. 해외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중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 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제1항제2호).
- 라.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범위를 목제품이용증진, 목 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으로 한정(안 제34조제1항).

법률 제 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제9조, 제10조, 제12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을 "따라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외"를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국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 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 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삭 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 uced Emissions from Defores tation and forest Degradatio n)이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 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하여 합의 한 활동을 말한다. 9. ~ 15. (생략) 9. ~ 15. (현행과 같음)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 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 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 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

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u>수</u>	있	다	

② 산림청장은 국외에서 산지전 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 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자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 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 탄소센터를 둔다.

- 1. (생략)
- 2.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

 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u>2의2</u>. (생략)

- 3. (생략)
- ② (생략)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저

-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 다.
- 1.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 1. 제12조-----

세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①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2</u> .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①

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국 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 2. 제31조에 <u>따른</u>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전문인력양성 및 국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
 관 또는 민간단체, 기업의 <u>국</u>
 <u>외</u>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4. (생략)
- ② (생략)

2.	따라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해당하는
3.	
	<u>제1</u>
	<u>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u>
	<u>하는 국외</u>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